의안번호	제 61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1월 1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17

제출연월일 : 2020년 1월 11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 사무명 변경, 근거법령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 설 : 13건(안 별표 1)

○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중(경제기업과 5건)

가. 소매가격표시 점포지정권

나. 가격표시 의무자에 관한 관계자료 제출명령권

다. 가격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라. 가격표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수

마. 가격표시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결과통보

- 신설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신설(물가안정법)

○ 발전설비(송배전부문제외) 1,000KW 이하 규모의 다음 사항 사무 중(에너지과 8건)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

마.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청문

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사. 공사 신고의 접수

아. 기술기준의 적합명령

- 신설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근거법령 개정(전기사업법)

□ 삭제 : 20건(안 별표 1)

○ 승강기 관한 다음의 사무 중(에너지과 3건)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 삭제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근거법령 개정(승강기 안전관리법)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 사항 중(문화예술산업과 8건)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 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바. 청문

사. 수수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삭제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삭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무 중(교통정책과 9건)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다. 공사시행의 완성

라. 사용개시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차. 사업개선 명령

타.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 간의 협의 및 통보

러. 면허의 취소

버. 과징금 처분

- 삭제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삭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그 밖의 개정사항 : 5건(안 별표 1)

<사무명 변경 : 1건>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무 중(교통정책과 1건)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 마. 위치의 변경

<근거법령 개정 : 4건>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에너지과 3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32조 → 제40조

나. 보고 및 검사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33조 → 제41조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42조 → 제51조

○ 승강기에 관한 다음 사무(에너지과 1건)

다.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1조 → 제7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세정담당관	1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자연재난과	1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3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4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같은 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5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같은 법 제29조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마. 인가내용 고시 바.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0조제10항
	7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제9항
	8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실시계획인가 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
	9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연 재 난 과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자.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차.「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2 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10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제7항
	11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2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3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법 제38조제1항
	14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신축 또는 개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같은 법 제38조제4항
	15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16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17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연 재 난 과	18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하천법 제69조
	19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같은 법 제70조
	20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72조
	21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22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등	같은 법 제76조
	23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같은 법 제78조
	24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같은 법 제90조
	25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 시 청문	같은 법 제91조
	26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98조
	27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28	· 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29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같은 법 제9조
	30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1	· 보상금액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2	·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3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34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민간협력 공동체과	1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회 계 과	1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복 지 정 책 과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단,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2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보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같은 법 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4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취득 보고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5	·사회복지법인의 자산·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같은 법 제51조
	6	·재해구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의 지원	재해구호법 제4조, 제5조
	7	·입양축하금의 지원, 환수, 대장의 관리	입양특례법 제3조 및 제41조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16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 건 정 책 과	1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식 의 약 안 전 과	1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다.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 마.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도매보고 바. 마약의 소매 보고 사. 행정처분 아. 청문 자.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차.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카. 몰수마약류의 폐기·처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제53조
경 제 기 업 과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경 제 기 업 과		자. 등록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
		나.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3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매가격표시 점포 지정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나. 가격표시 의무자에 관한 관계자료 제출 명령권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다. 가격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라. 가격표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수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마. 가격표시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결과통보	같은법 제18조제1항, 제3항
투 자 유 치 과	1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산업단지는 제외하며, 그 밖에 KGB복합, 옥산, 오창제2, 오창제4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청주시에 위임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	·처분·양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3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4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에너지과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2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6항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같은 법 제40조제4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에너지과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78조제4항
	3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같은 법 31조제1항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78조제4항
	4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5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청문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66조
		나. 비법정단위 사용에 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 명령	같은 법 제6조
		다. 자체수리자 지정 및 변경신고 처리	같은 법 제8조
		라. 수입업자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같은 법 제9조, 제12조
		마.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 검사의 증인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
		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 정량의 표시명령 정정요구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42조
		사. 보고 및 조사 등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아. 개선명령	같은 법 제52조
		자. 부정계량기의 처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같은 법 제52조,제 55조, 제56조
		차. 지위 승계신고 및 처리	같은 법 제63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6조
	6	·어린이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3조
	7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41조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1조
	8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제2호, 제3항
	9	·발전설비(송배전부분제외) 1,000kw 이하 규모의 다음사항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6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에너지과		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라. 전기사업의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마. 전기사업 허가취소 청문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사. 공사 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6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아. 기술기준의 적합명령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농 업 정 책 과	1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나. 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유 기 농 산 과	1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
	2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같은 법 제17조
	3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같은 법 제24조
	4	·다음 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단,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같은 법 제26조
	5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20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6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수산과	1	·도축장 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2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사무	
		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법 제14조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같은 법 제15조
		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고	같은 법 제17조
		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같은 법 제18조
		마. 보호비용 청구	같은 법 제19조
		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권 취득	같은 법 제20조
		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분양·기증	같은 법 제21조
		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같은 법 제22조
문화예술산업과	1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관한 허가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나.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건축문화과	1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16조
	2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43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균형발전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항
	2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3	·시장·군수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등으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법 제30조, 제50조
	4	·기반시설 중 다음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마.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사. 공동구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형발전과		아. 공공공지 자. 수도공급설비 차. 전기공급설비 카. 가스공급설비 타. 방송·통신시설 파. 시장 하. 열공급설비 거.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너.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더. 문화시설 러. 연구시설 머. 사회복지시설 버. 공공직업훈련시설 서. 청소년 수련시설 어. 유수지 저. 방화설비 처. 저수지(댐 제외) 커. 방풍설비 터. 방수설비 퍼. 사방설비 허. 방조설비 고. 하수도 노. 도축장 도. 장사시설 로. 종합의료시설 모. 폐차장 보.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오. 수질오염방지시설 조. 하천(소하천에 한함) 초.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코.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5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30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6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같은 법 제32조
	7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 법 제48조, 제53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8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형발전과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같은 법 제98조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부터 제91조
	11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33조
	12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시개발법 제4조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	같은 법 제9조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19조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같은 법 제26조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같은 법 제58조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66조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1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13조
		나.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다. 준공검사	같은 법 제50조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52조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14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6조의2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 형 발 전 과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 로 과	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도로법 제61조, 91조
		나. 점용공사의 확인	같은 법 제62조제2항
		다. 점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66조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같은 법 제68조
		바.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사. 원상회복	같은 법 제73조
		사.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7조
	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1호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2호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같은 법 제40조제4항
	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06조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
		라.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
	4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가.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같은 법 제33조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같은 법 제35조
		다.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90조
		라. 법령위반 등에 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같은 법 제96조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같은 법 제97조
		바. 도로에 관한 조사	같은 법 제102조
		사.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	도로법 제52조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5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6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정 책 과	1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7조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4조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 취소, 사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같은 법 제27조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같은 법 제28조
		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같은 법 제3조, 제5조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같은 법 제6조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
		마.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 취소	같은 법 제8조의2
		바. 등록번호표의 반납	같은 법 제9조
		사.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새김 명령 등	같은 법 제11조
		아.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자.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차.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같은 법 제34조의2
		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같은 법 제35조의2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4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시·군 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정 책 과	5	·자동차의 사용정지	같은 법 제89조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나. 사용약관 인가	같은 법 제40조
		다.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라.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마. 위치의 변경	같은 법 제43조
		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같은 법 제48조
		사. 재정지원, 조합감독	같은 법 제50조, 제57조
		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같은 법 제53조
		자.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같은 법 제54조
		차. 정관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56조
		카. 청문	같은 법 제86조
	7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처리	같은 법 제55조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같은 법 제56조
		라.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같은 법 제56조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8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31조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같은 법 제32조
		라.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항, 제35조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같은 법 제85조
		차. 청문	같은 법 제86조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같은 법 제88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정 책 과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9	·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시외버스 제외)	같은 법 제22조제1항
	10	·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 및 차량 초과 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1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군 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등록	같은 법 제4조
		나. 수송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연기·개시기간연장 승인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 및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3조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4조
		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5조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6조
		차.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같은 법 제19조제2항
		카.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타.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같은 법 제85조
		파. 청문	같은 법 제86조
		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88조
		거.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94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정 책 과	1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	같은 법 제27조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8조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2항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33조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37조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같은 법 제40조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같은 법 제45조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같은 법 제46조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카. 청문	같은 법 제61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8조
		파.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승인 및 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하. 허가증의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거.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같은 법 제25조,
		연장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같은 법 제23조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같은 법 제27조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8조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29조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정 책 과	3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사무 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 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형 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 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내역, 다이옥신 검사결과, 고형연료 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의10 별표 10
기 후 대 기 과	1	·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다음 사무(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가. 대기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같은 법 제4조제2항
		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5조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같은 법 제17조
	3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3조
		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다. 측정기기 조치명령	같은 법 제32조제5항
		라. 조업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32조제6항, 제34조
		마.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제22조
		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사.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36조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7조
		자. 위법시설에 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차.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4항
	4	· 대기관리권역 내 환경부령으로 정한 가정용 보일러의 의무설치에 대한다음 사무 가. 가정용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나.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5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 후 대 기 과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4항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같은 법 제42조
	6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7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8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같은 법 제94조
	9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4항
	10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수질 1~5종 사업장)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 관리	같은 법 제38조의2
		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같은 법 제38조의3
	1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의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같은 법 제68조
	12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다.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13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6조
	1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23조제3항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4조의2
		라. 오염기기 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15	·석면안전관리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석면 등의 사용금지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 후 대 기 과		나.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다.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라.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마.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자동차 단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6조제3항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수 자 원 관 리 과	1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가. 먹는물에 관한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는 제외)	
	2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21조제2항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1조제7항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24조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5조제3항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바.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42조
		사. 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45조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같은 법 제46조
		자.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47조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같은 법 제48조
		카. 청문	같은 법 제50조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같은 법 제51조제1항, 제3항
		파. 위반사실 등의 공표	같은 법 제51조의2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같은 법 제61조제2항, 제3항
	3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42조
	4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8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녹 지 과	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8조
		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2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같은 법 제13조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3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 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산림청고시 제2013-87호>
	4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같은 법 제37조
		다.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 신청의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사.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41조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같은 법 제42조
		자. 복구비의 반환	같은 법 제43조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3항
		타.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5	·임업후계자의 선발·육성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별표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총무과	1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 내 전보권 (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7의2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을 위임) ·별정직·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3]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3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대응예방과	1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허가	
		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용도폐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제11조
		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및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	같은법 제8조제1항,제9조제1항
		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승계신고의 수리	같은법 제10조
		라. 예방규정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명령	같은법 제17조
		마.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 사용 정지권	같은법 제12조
	2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나. 과징금 처분	같은법 제10조
		다. 등록취소 청문	같은법 제32조
	3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나. 과징금 처분	같은법 제10조
	4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법 제31조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같은법 제32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같은법 제34조
		마. 과징금 처분	같은법 제35조
		바. 등록취소 청문	같은법 제44조제2호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같은법 제16조제3항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같은법 제16조제5항

[별표 4]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4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학내 전보권 ·부교수이하 임용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2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자치연수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의 원내 전보권 ·5급 상당 연구관·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연구소장은 제외)	농업기술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원내 전보권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5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의 당해 기관 내 전보권	당해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5]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7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총무과	1	· 지방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청내 전보권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단, 개방형 직위는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관 계 법 령　발 췌

공통사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위임(조례) 사무 관련 법령

경제기업과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과 용역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의 권한은 제3조에 따른 명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관한 지정 권한에 한정한다)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 법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5. 다음 각 목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관한 권한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도·소매업에 관한 권한

다. 가목 및 나목의 권한과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

에너지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9.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8.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경우
8.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조 단서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4. 제30조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⑤ 시·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6. 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교환·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조설비·검사설비, 제품,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 일시
2. 검사 이유
3. 검사 내용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성명
2. 출입 시간
3. 출입 목적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7.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1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1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1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8.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자
22. 제3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66조제5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71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의8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81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9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문화예술산업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해당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및 서버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압류

②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해당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교통정책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도지사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③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3조(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터미널사업자가 제38조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하려면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확인을 한 경우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시설확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